#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2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구자근 · 권영세 · 박준태

강대식 • 인요한 • 박덕흠

유상범 • 김성원 • 김선교

김도읍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·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 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 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.

그러나,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,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없어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허점이 있음.

또한,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불법해외인수·합병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지·금지·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도록

하고 있으나,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.

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9조의2 신설).
- 나.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·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9조의3 신설).
- 다.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 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- 라. 국가핵심기술의 유출과 관련된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침해신고 관련기관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.
- 마. 국가핵심기술 판정, 보유기관 등록, 시정명령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(안 제34조).
- 바. 제9조의2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을 아니한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되도록 함(안 제39조).

사.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·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중지·금지·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0조).

### 법률 제 호

#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6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.

제9조의2를 제9조의4로 하고,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2(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) ① 기업·연구기관·전문 기관·대학 등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신청이 없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,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 등을 통하여 기업·연구기관·전문기관·대학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·연구기관·전문기관·대학 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신청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판정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의3(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) ① 기업·연구기관·전문 기관·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.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1.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
  - 2.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
  - 3.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갖게 된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- 1.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
- 2.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 수·합병등을 통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 한 권리·자료·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
- 3. 대상기관이 국내법인·기업 등에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 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갖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의 제목 "(개선권고)"를 "(개선권고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"을 "제3항"으로, "개선권고를"을 "시정명령을"로, "개선권고의"를 "명령의"로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개선대책의 수립·시행 및 제3항에"를 "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, 제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·시행,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

제4항에"로 한다.

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확인·점검을 할 수 있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,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제34조에 제2호의2, 제2호의3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

2의2.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.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자

3의3.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제6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.

제39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- 5.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

- 6. 제11조제9항 및 제11조의2제1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
- 7.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40조(이행강제금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중지·금지·원상회복 등의 조치에 대한 명령을 받은 후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1,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  -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·납부·징수·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 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,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제9조의3의 개정

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9조(국가핵심기술의 지정・변 제9조(국가핵심기술의 지정・변 경 및 해제 등) ① ~ ⑤ (생 경 및 해제 등) ① ~ ⑤ (현행 략) 과 같음)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 <삭 제> 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 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할 수 있다. ⑦ (생 략) ⑥ (현행 제7항과 같음) 제9조의2(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<신 설> 판정 등) ① 기업・연구기관・ 전문기관 · 대학 등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 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 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신 청이 없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3조, 제15조, 제17조 의 규정 등을 통하여 기업 • 연 구기관 • 전문기관 • 대학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관

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 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 · 연구기관 · 전문기관 · 대 학 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 정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 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 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신청기관의 장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판 정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 다.

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판정신 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 설>

- 제9조의3 (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의 등록 등) ① 기업・연구기관 ・전문기관・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등 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.
  - 1.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 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 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
  - 2.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치법」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학교 전략기술 해당 한경을 받은 경우
  - 3.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 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 를 갖게 된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 심기술을 보유한 대상지관은 다

-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안 날부 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.
- 1.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

   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
- 2.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·합병등을 통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 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 ·자 료·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
- 3. 대상기관이 국내법인·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갖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 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

<u>제9조의2</u>(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 공개) (생 략)

제13조<u>(개선권고)</u> ①·② (생 략) 제13조<u>(개선권고 등)</u> ①·② (현

<신 설>
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한 경우 해당 개선 권고의 주요 내용 및 이유, 대상 기관의 조치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

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의4(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) (현행 제9조의2와 같음) 제13조(개선권고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및 제2항의 개선권고에 대하 여 확인·점검을 할 수 있고,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기 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.
- <u>④</u> ----- <u>제3항</u>

시정명령을 ----- 명령의

\_\_\_\_\_

-----.

⑤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, 제2

권고 및 개선대책의 수립 · 시행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조사) ①・② (생 략) <신 설>

### ③ (생략)

제34조(비밀유지의무)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 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.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항이	네 따른 기	H선대	백의 수립 •	시
행,	제3항에	따른	시정명령	및
제4	항에			

제17조(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 | 제17조(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>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 조제1항에 따른 침해신고가 있 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,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 는 경우에는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34조(비밀유지의무) -----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2의2.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 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자
- 2의3.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 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

3. · 3의2. (생 략) <신 설>

4. ~ 10. (생략)

제3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39조(과태료) ① -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단서 신설>

1. ~ 3.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략)

<신 설>

3. • 3의2. (현행과 같음) 3의3.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

4. ~ 10. (현행과 같음)

다만, 제6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하지 아 니한 자
- 5.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 청하지 아니한 자
- <u>6</u>. 제11조제9항 및 제11조의2제 1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
- 7.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 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40조(이행강제금)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중지・금지・

원상회복 등의 조치에 대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1,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-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·납부· 징수·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 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 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